

구미시 중앙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 동약안



구 미 시

구미시 중앙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6.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 기존 구미하수처리장은 시설용량을 초과하여 하수가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며, 각종 개발계획에 따른 하수량 증가로 낙동강 수질오염 및 시민의 생활환경 악화가 우려되어 시설용량을 초과하는 하수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신설하수처리시설의 설치로 낙동강 수질개선 및 시민의 생활환경개선 도모 필요
- 구미시 중앙하수처리시설 건설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나, 우리시 재정상 하수처리시설을 조속한 시일내 건설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 재정부담 완화 및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미시 중앙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을 BTO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

※ 본 사업은 BTO방식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규정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해당시설의 소유권이 구미시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임.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

4. 내 용

구미시 중앙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 규정에 따라 구미시 중앙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따른 의무부담행위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사업명 : 구미시 중앙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

○ 사업위치 : 구미시 오태동 일원

○ 사업개요

• 하수처리시설 55,000m³/일

• 공급관로 3.6km

• 부지면적 59,926m²

- 사업기간 : 36개월(시운전 6개월 포함)
- 총사업비 : 948억원(국 474(50%), 도 99(10.5%), 수계기금 142(15%), 민자 233(24.5%))
- 최초제안자 : (가칭)구미맑은물주식회사

※ 위 제안자는 제3자 공고 및 심사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업타당성 및 민자적격성 검토결과

- 조사기관 : 한국개발연구원(KDI)
- 조사기간 : 2014. 11. 24 ~ 2015. 11. 27
- 평가결과 : 사업타당성 및 민자적격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B/C(비용편익비) : 0.95¹⁾, 1.75²⁾, VFM(민자적격성) : 5.42%(VFM >0 이상 적격성 확보)]

주) 1)의 경우 과부하량에 대한 유지보수 절감편익 가정시 비용편익비이며,

2)의 경우 신규편익으로 가정시 비용편익비 임

5. 참 고

○ 추진현황

- '14.04.24 : 구미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승인(환경부)
- '14.06.03 :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접수
- '14.09.30 : 국고지원 사전협의(환경부)
- '14.11.24 : 제안서 타당성 검토 의뢰(구미시 → 공공투자관리센터)
- '15.11.27 : 제안서 타당성 검토 완료(공공투자관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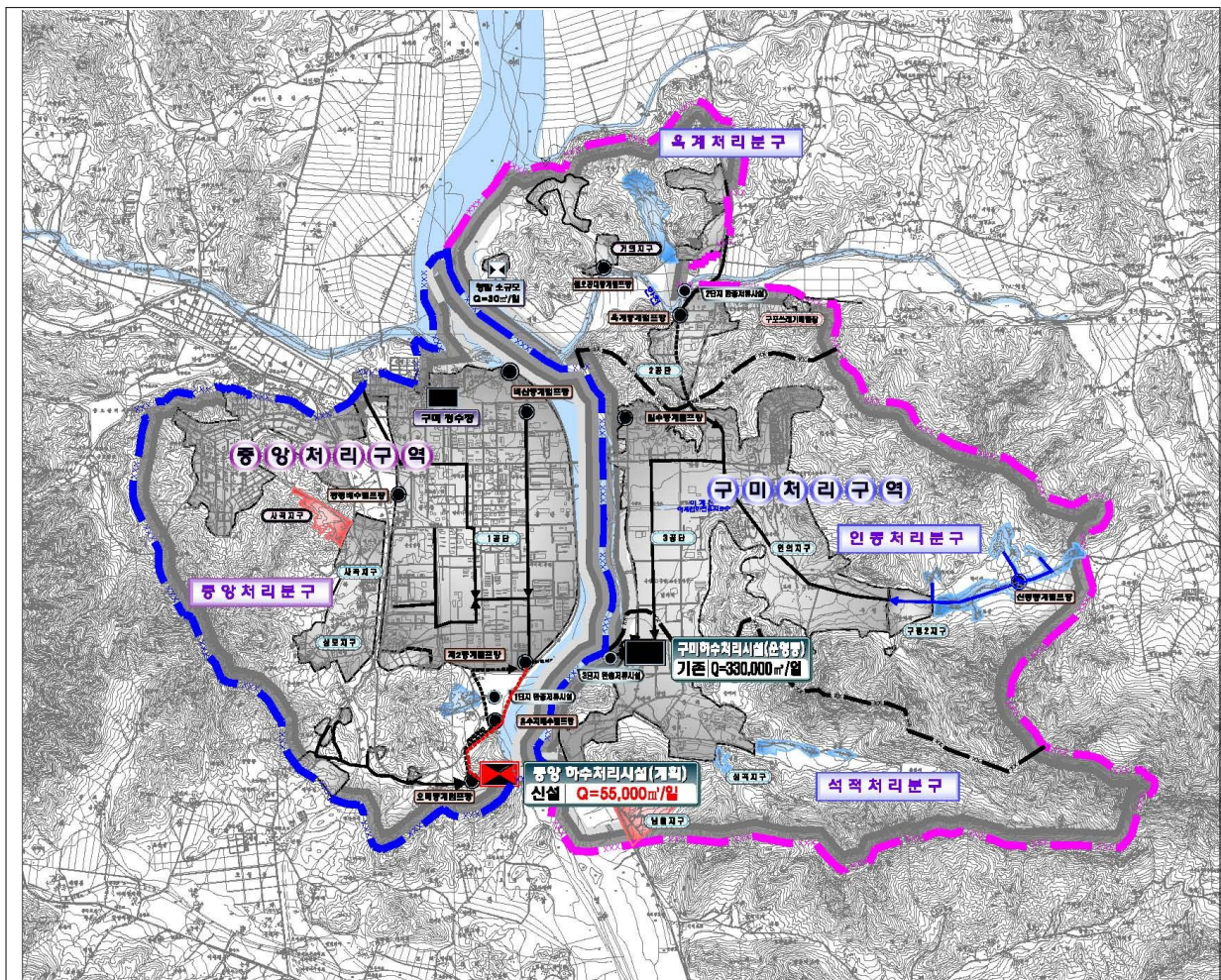
○ 향후계획

- 2016. 07 : 제3자 제안공고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 2016. 11 :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 2017. 06 :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 착수
- 2020. 06 : 공사 준공

○ 위치도



○ 구미시 하수도처리구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소관 실·과		하수과
입 안 자	과 장	방 성 봉
	담 당	장 창 식
	담 당 자	황 준 선 (480-4622)